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일반임기제 행정6급] 채용 공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5월 11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2명)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임용예정직급	채용기간
노동기준 (변호사)	1명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1과(수원시)	행정 6급 (일반임기제)	임용일부터 2년
산업안전보건 (변호사)	1명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1과(수원시)	행정 6급 (일반임기제)	임용일부터 2년

※ 근무실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담당 업무(범위: 청 및 관할지청 포함)
일반임기제 행정6급	노동기준 (변호사)	○ 노동기준 분야 수사 현안 및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법령해석 및 자문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노동관계법 관련 주요 판례 분석·공유·교육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 (변호사)	○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수사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대재해 관련 주요 판례 분석·공유·교육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변호사법」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6. 6. 9.) 기준]

채용분야	세부 응시 요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일반임기제 행정6급 (노동기준)	응시 자격 요건	자 격 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일반임기제 행정6급 (산업안전보건)	응시 자격 요건	자 격 증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변호사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 6. 9.) 기준**으로 판단함
- ※ 「변호사법」 제4조 관련 증빙자료 제출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 5. 22.) 기준]

우대 요건	노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관리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수사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노동관계법령 관련 형사소송사건 3건 이상 수행 실적(건별 차등 우대)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수사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산업안전보건법령(중대재해처벌법 포함) 관련 형사소송사건 3건 이상 수행 실적(건별 차등 우대)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 2]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 5. 22.)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도 우대 인정**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비전임, 주당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가능한 경우,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②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관련 직무분야 경력임을 증명해야함(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추가 제출하되, 응시자 이외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노무관리/산업안전보건 분야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수행한 해당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 제외
- ‘**수사 분야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1년 이상 수행한 수사 경력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경력 포함)을 의미함
- 동일 기간에 동일 분야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①~④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 형사소송 수행 실적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채용분야 관련 형사 소송사건을 3건 이상 수행한 실적
 - ※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하며, 직접 수행한 실적 검증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 (증빙서류 예시)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 ※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 시 1건으로 인정(1심 선고 이후 상급심 진행 중인 건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1건으로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자격요건, 우대 요건 등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할 때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임용후보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직무 전문성(해당 분야의 업무 수행 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 5. 11.(월) ~5. 22.(금)	5. 20.(수) ~5. 22.(금)	6. 4.(목)	6. 9.(화)	6. 18.(목)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www.moel.go.kr/local/gyeonggi/index.do)에 게재 예정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 바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후보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6. 5. 20.(수)~5. 22.(금) 09:00~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등기우편(빠른등기) 접수**
 - ※ **등기 접수증**을 담당자 메일(dnyj23@korea.kr)로 제출(접수누락 방지를 위해 접수당일 제출)
 - ※ **겉봉투 표지**는 본 공고 마지막 페이지 "**서식(봉투표지 양식)**" 활용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불가**

- **등기우편접수 주소:** (우) 163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경기지방 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채용담당자 앞(일반임기제 행정6급 응시원서 재증)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본 편철하지 말고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 단면인쇄(스태이플러 사용금지), 모아찍기하지 않음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본 첨부
 -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귀속
 -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문의전화:** 031-259-0307, 031-259-0219, 031-259-0213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제출서류 안내)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 제1호서식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 첨부 ○ 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증빙서류 각 1부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4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5호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초본(남성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 포함) 1부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 별지 제8호서식 (필요시 활용)
	소송수행 실적 1부(증빙자료 포함)	○ 별지 제9호서식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응시원서는 2개 직위 중 1개의 직위만 지원할 수 있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회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26. 5. 11. 8개 청(대표지청) 합동으로 채용공고를 시행하므로 각 청에 중복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체 지원 건수가 무효화 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 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등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누락 및 착오 기재가 있거나, 기재 내용이 미흡할 경우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등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면접시험 종료 후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확인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증빙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dnyj23@korea.kr)로 제출하시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증빙서류를 통해 평가에 반영된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합격이 무효·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26. 7월 예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임용일부터 2년
 - ※ 근무실적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81,945	41,288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주최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의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노동기준 분야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노동기준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노동기준조사1과(수원시)

<p>주요 업무 (범위: 청 및 관할 지청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기준 분야 수사 현안 및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법령해석 및 자문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노동관계법 관련 주요 판례 분석·공유·교육
-------------------------------------	--

<p>필요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 윤리(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민주성) ○ 기존 직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관계구축 능력
--------------	--

<p>필요 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수사 관련 지식 ○ 개별·집단적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지식 ○ 법률 해석 및 그에 따른 자문 수행을 위한 지식 ○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분석을 통한 쟁점 파악 지식
--------------	---

<p>응시자격요건</p>	<p>채용분야: 노동기준</p>	
	<p>※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p>	
	<p>자격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p>우대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관리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수사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노동관계법령 관련 형사소송사건 3건이상 수행 실적(건별 차등 우대) 	

※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충족 이전 경력도 인정

※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2] 산업안전 분야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중대재해수사1과(수원시)

주요 업무 (범위: 청 및 관할 지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수사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대재해 관련 주요 판례 분석·공유·교육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 윤리(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민주성) ○ 기존 직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관계구축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수사 관련 지식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지식 ○ 법률 해석 및 그에 따른 자문 수행을 위한 지식 ○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분석을 통한 쟁점 파악 지식
--------------	--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수사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포함) 관련 형사소송사건 3건 이상 수행 실적(건별 차등 우대) 	

※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은 응시자격충족 이전 경력도 인정

※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학위)**일 경우 **반드시 공증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구 분	내 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 필수서류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이하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 하여 제출(이하 제출서류 순서대로 배치)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부착: 7,000원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상단 오른쪽 자필서명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필수서류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빙서류 : 필수서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필수서류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 필수서류	○ 별도 양식 없으며 분량은 A4용지 요약서 1매 + 본문 4매로 작성(총 5매 이내) ○ 자필 서명 필수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 해외학위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 및 추가 제출(제출된 학위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대학 담당자 이름, 이메일 반드시 기재)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8.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남성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되,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9. 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필수서류 ≡ 전형위원 제척·기피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학교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필수 첨부 ○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임용 전까지 제출 ※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 FAX, 이메일,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10.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요 시 별지 제8호서식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와 함께 ‘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경력 인정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담당업무, 근무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 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11. 소송수행 실적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3호서식] 이력서 서식의 ‘소송수행 실적’란 기재로 대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자필 서명 필수